##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43

발의연월일: 2025. 6. 12.

발 의 자:조계원·김재원·박수현

양문석 • 박지원 • 이학영

민형배 • 주철현 • 윤준병

김윤덕 · 김문수 · 민병덕

이광희 • 이기헌 • 양부남

김현정 · 임오경 · 김우영

(18일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과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, 이들 관광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주택이나 한옥 등을 관광객이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다른 관광사업에 비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크다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성범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

옥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,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 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 14조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##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제3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4조의2(결격사유) ①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,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등록을 할 수 없다.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- 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외국인관 광 도시민박업자 또는 한옥체험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 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인 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

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광객 이용시설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 업을 등록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4조의2(결격사유) ①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」,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. 법인의 경우그 임원 중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아니한 자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또는 한옥체험업자가 제1항에 해당 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 야 한다. 다만,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.